



핵무기 금지 조약

2017년,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과 그 협력 단체들이 10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122개국이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조약은 2021년에 발효되었다.

그전까지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체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조약은 국제법의 중대한 공백을 메웠다.

이 조약은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발전, 세계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복지에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서 탄생했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다자조약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틀과 핵무기 사용 및 실험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처음으로 마련한 조약이기도 하다.

현재 핵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 조약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 금기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미뤄져 온 군축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역사는 특정 유형의 무기를 금지하는 것이 그 무기의 제거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불법화된 무기는 점점 더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식되며, 그 정치적 지위와 함께 생산을 위한 자원 또한 잃게 된다.

시간이 지나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수록 이 조약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핵보유국들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력도 한층 커질 것이다. 현재까지 세계의 절반이 넘는 나라가 이 조약에 참여했다.

이 조약은 대규모 파괴의 위협이 허용되는 세계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중대한 위기의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주요 내용

금지 조항

핵무기금지조약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 실험, 생산, 획득, 비축, 이전,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자국 영토 내에 다른 국가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행위와, 타국이 조약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폐기를 위한 틀

이 조약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을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핵보유국은 즉시 자국 핵무기를 작전 상태에서 해제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최대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또는 조약 가입 전에 핵무기를 우선 폐기하고, 지정된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검증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

이 조약은 국가들이 핵무기의 사용과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의료 지원, 재활, 심리적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조약들과의 연계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와 관련된 기존 조약들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핵무기 보유국 수를 제한하고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1968년에 제정된 핵확산금지조약도 포함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확인했듯이, 모든 국가는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타결에 이르게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향한 행동이 부족했다는 점이 핵무기금지조약한 협상의 주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 밖의 조약으로는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남태평양,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지대를 설정한 지역 조약들이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전쟁의 방법과 수단을 제한하는 국제인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 또는 과도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금지된 무기



생물학무기
- 1972년 금지



접속탄
- 2008년 금지



화학무기
- 1993년 금지



핵무기
- 2017년 금지



대인지뢰
- 1997년 금지



2025년 뉴욕에서 열린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회의. 사진 제공: 핵무기폐기국제운동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

어느 국가든 언제든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도 조약 가입국이 더 늘어나고, 자국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참여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다른 조약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이 협상되던 당시에는 이에 반대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결국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영구히 집권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 조약의 장점을 차기 정부는 인정할 수도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보편적 참여”를 위해 다른 국가들의 가입 독려할 의무를 가진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핵무기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핵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조약은 최악의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큰 희망을 제시한다.

“이 조약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특별한 기회를 바로 붙잡아 핵무기의 시대를 종식시킵시다.”

- 국제적십자위원회, 2020년

군축을 실천한 국가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카자흐스탄

핵무기금지조약의 대표적인 지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카자흐스탄은 행동을 통해 핵무기 폐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했을 당시, 자국 영토에 1,400기 이상의 핵무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는 군축을 통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90년대 초,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막을 내릴 무렵 같은 결론에 이르러 보유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해체했다. 이 조치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

두 국가의 지도자들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는 데 자국이 기여한 바에 큰 자부심을 표해 왔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핵폭탄의 외피.

**“2021년 1월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것은 놀라운
성과였으며, 핵무기 폐기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2021년



2017년 TPNW 고위급 서명식. 사진 제공: UN 포토